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4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원더풀 복지봉사단 운영 규정

2. 개정이유

- 각종 재해·재난 발생 및 취약계층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원더풀 복지봉사단을 구성·운영하여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하고 사회 저변에 봉사활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기본방향(안 제1~2조)
- 정의, 적용범위(안 제3~4조)
- 단원의 직무(안 제5조)
- 봉사단 운영(안 제6조)
- 단원 및 임원 구성(안 제7조)
- 단원 모집(안 제8조)
- 단원 가입 및 위촉(안 제9조)
- 단원 탈퇴 및 위촉(안 제10조)
- 임원의 선출(안 제11조)
- 임원의 임기종료(안 제12조)
- 임원의 직무(안 제13조)
-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등(안 제14조)
- 봉사활동 등(안 제15조)
- 포상(안 제16조)

제17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원더풀 복지봉사단 운영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월 24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

